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(횡령)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

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2. 28. 2010고합160,2010고합318(병합)]

알선수재)·배임수재·범인도피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피고인 1 외 8인

【검사】유천열외1인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박승권 외 7인

【주문】

1

- 1. 피고인 1을 징역 6년에 처한다.
- 피고인에 대한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및 2009. 10.
- 9. 업무상횡령의 점의 각 무죄.
- 2. 피고인 2를 징역 6년에 처한다.

피고인에 대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의 점은 무죄.

3.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4. 피고인 4를 징역 5년 및 벌금 2억 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한다.

5. 피고인 5를 징역 2년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봉사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1억 4,000만 원을 추징한다.

6. 피고인 6(대법원판결의 공소외 10)을 징역 2년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봉사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.

7. 피고인 7(대법원판결의 피고인 6)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봉사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 피고인으로부터 1억 4,000만 원을 추징한다. 8. 피고인 8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봉사활동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 피고인으로부터 1억 4,000만 원을 추징한다. 9. 피고인 9를 벌금 5,000,000원에 처한다.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 [이유] 1

[이유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1

[이유]

[이유]

1

[이유]

1